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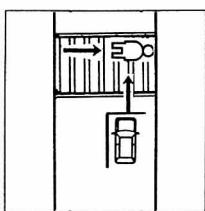
차량과 사람 사이의 사고 과실상계

■ 횡단보도, 육교가 있는 장소 부근

(통상 20~30m 이내, 간선도로에서는 50m 이내)

가. 기본과실

40%



나. 판결 예

① 편도 1차선, 앞차 지난

직후 횡단, 주택가, 음주보행, 횡단보도 5m 전방, 피해자 과실 4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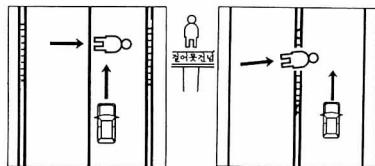
② 야간, 횡단보도 전방 20m, 편도 3차선, 비, 음주보행, 시속 40km, 피해자 과실 40%

③ 야간, 편도 2차선, 횡단보도 전방 6m, 검정색 계통의 상의의 입고 중앙선 지점에서 뒷걸음치며 물러서다 뒷차선 주행하는 차량에 충격, 피해자 과실 40%

④ 새벽 2시, 횡단보도 전방 20m, 편도 3차선의 3차선 부근, 무단횡단, 피해자 과실 35%

⑤ 야간, 편도 2차선 간선도로, 횡단보도 2m 전방, 피해자 과실 20%

⑥ 야간, 편도 3차선, 횡단보도 40m 전방, 피해자 과실 40%



나. 판결 예

① 야간, 편도 2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(남부순환도로),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, 피해자 과실 5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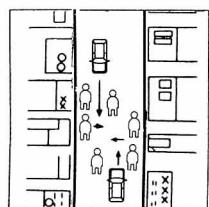
② 야간, 편도 4차선의 2차선상, 중앙분리대 설치, 1분당 50대의 차량통행, 음주, 무단횡단, 피해자 과실 40%

③ 가드레일 설치로 보·차도구분, 야간, 횡단보도 30m 전방, 편도 2차선, 남부순환도로 너비 1.1m, 높이 12cm 중앙분리대 설치, 시속 70km, 무단횡단, 피해자 과실 50%

■ 주택가 상가지역 횡단

가. 기본과실

15%



나. 수정요소

① 야간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추가

② 아동, 노인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감소

③ 집단횡단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감소

■ 횡단금지의 표식이나 표지가 있는 장소

가. 기본과실

50%

- ④ 보·차도 구별 없는 경우 피해자 과실 5% 감소
- ⑤ 차의 현저한 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10% 감소
- ⑥ 차의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20% 감소

다. 판결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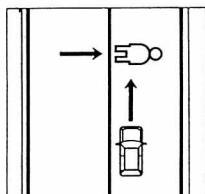
- ① 야간, 편도 2차선의 2차선상, 상가지대, 시속 50km, 횡단보도 39.5m 전방, 피해자 과실 30%
- ② 상가 및 주택가 밀집한 노폭 6.3m의 편도 1차선의 국도, 피해자는 4년 4개월된 어린이, 무단횡단, 차량속도 30km, 피해자 과실 25%
- ③ 상가지대의 편도 1차선, 자전거타고 횡단, 차량 속도 45km(제한속도 30km), 피해자 과실 20%

■ 일반도로 횡단

(도로폭 13m 이하, 왕복 2차선)

가. 기본과실

20%



나. 수정요소

- ① 야간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추가
- ② 아동, 노인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감소
- ③ 집단횡단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감소
- ④ 보·차도 구별 없는 경우 피해자 과실 5% 감소
- ⑤ 차의 현저한 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10% 감소
- ⑥ 차의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20% 감소

다. 판결 예

- ① 야간, 비, 횡단보도 59m 지점, 우산쓰고 둘이 걸음, 피해자 과실 30%
- ② 야간, 편도 1차선, 시속 40km, 주위는 야산과 언덕, 음주만취, 뛰어건념, 교행하는 차량사이로 횡단, 피해자 과실 3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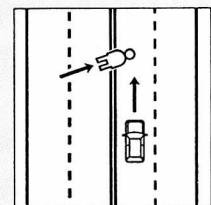
- ③ 야간, 도로 2차선상을 시속 50km로 주행, 도로 무단횡단, 피해자 과실 30%
- ④ 야간, 편도 1차선 지방국도, 맞은편 버스에서 내려 횡단하는 보행자를 음주상태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격, 피해자 과실 20%

■ 간선도로 횡단

(도로폭 14m 이상, 왕복 4차선 이상,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)

가. 기본과실

30%



나. 수정요소

- ① 야간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추가
- ② 아동, 노인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감소

다. 판결 예

- ① 편도 2차선, 야간, 서울·수원간 산업도로, 앞에서 정지하는 차 추월하여 나가다가 횡단자 충격, 피해자 과실 60%
- ② 야간, 편도 2차선, 교통빈번, 시속 50km, 왼쪽에 골목길, 음주보행, 피해자 과실 40%
- ③ 야간, 편도 2차선, 황색복선, 수인산업도로, 음주보행, 피해자 과실 35%
- ④ 야간, 도로폭 20m의 편도 3차선 도로, 무단횡단, 피해자 과실 35%
- ⑤ 야간, 우중, 편도 2차선, 무단횡단, 보행자 과실 30%

다음호에도 계속적으로 차량과 사람사이에서의 사고시 과실상계와 기타 사고 유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